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4
------	-----

제출년월일 : 2002. 11. 26.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사유

행정자치부의 기금관리실태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하므로써 부합되지 않은 일부조항 및 규제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정의(안 제2조)
- 나. 기금의 조성(안 제3조)
- 다.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4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재난관리법
- 입법예고 : 결과 의견 없음

4, 본 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위험시설 등 : 긴급히 보수·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
2. 중점관리대상시설 등 :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3. 읍자대상 민간시설 : 법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시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제3호중 “수입금”을 “잡수입금”으로 하고, 동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적립금을 매 회계연도 3월이내에 적립하고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 추경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3조(종전의 제3조)를 제4조제1항으로, 제4조(종전의 제4조)제1항 내지 제2항을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제4조의 제목 “(기금의 관리)”를 “(기금의 운용·관리)”로 하여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고

성군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의 수입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운용·관리한다.

③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p> <p><u>제2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 <p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p> <p><u>제3조(기금의 운용) 군수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고성군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u></p> <p><u>제4조(기금의 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고성군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u></p> <p><u>②기금은 고성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재난위험시설 등 : 긴급히 보수·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u> 2. <u>중점관리대상시설 등 :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u> 3. <u>유자대상 민간시설 : 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시설</u> <p><u>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u>잠수입금</u> <p><u>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적립금을 매 회계연도 3월이내에 적립하고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 추경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u></p> <p><u>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고성군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u></p> <p><u>②군수는 기금의 수입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운용·관리한다.</u></p> <p><u>③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u></p> <p><u>④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u></p>